

Newszine

A Quarterly Update of Legal Developments in Korea

June 2016, Issue 2

UPDATES 법률정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및 시행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대상 법인에 대한 고시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 발족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 및 시행

민법 개정에 따른 근보증 관련 조항 신설

개정중재법 공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개정안

CASES 업무사례

- 한국씨티은행·한국씨티그룹캐피탈,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오케이저축은행에 자산 매각
-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신주 발행 및 매각
- CJ대한통운, 스틱씨제이글로벌투자파트너십과의 공동투자를 통한 룽칭물류 인수
- 한앤컴퍼니가 투자한 에이치라인해운의 현대상선의 벌크사업부 인수
- 대법원, 가격인상 담합 사실인정 신중해야
- 통상임금 소송의 신의칙 항변 적용 사례
- 공정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서비스에 업그레이드 권한을 포함하여 판매한 행위 등에 대해 무혐의 종결
- 실질적 관리장소의 정의 및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
- 롯데쇼핑의 미화 1억 달러 규모 해외 사모사채 발행
- 퍼시픽 라이프 한국 지점 설립 본허가
- 해외 선박부품공급계약 상 부품하자 관련 분쟁을 다룬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승소
- ICC 국제긴급중재절차에서 제기된 한국기업에 대한 기술사용금지 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
- 폰테가데아(Pontegadea) 그룹, 명동 앰플라자 취득

NEWS 새소식

수상소식

아시아-태평양 지역 혁신 로펌 선정 - FT Asia-Pacific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6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 - Who's Who Legal Awards 2016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6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 - IFLR Asia Awards 2016

7개 전 분야 선두 로펌 선정, 28명의 변호사 및 전문가 Leading individual 선정 - Chambers Global 2016



사무소 동정

2016 춘계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전략 세미나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관련 법·정책 세미나 참여

국내 제약업계의 CP(Compliance Program)운영 확산을 위한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 발표

사회 공헌

'동화책 읽어주는 남자'로 변신한 전 헌법재판관·고검장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기업일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및 시행

박종구 변호사(jkpark@kimchang.com)
김태오 변호사(teo.kim@kimchang.com)

2015년 12월 31일 폐지된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구 기촉법”)의 재입법에 해당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신 기촉법”)이 2016년 3월 8일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신 기촉법에 따른 변경사항은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기업구조조정절차의 통과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1. 기촉법 적용대상 채권자 범위 확대

구 기촉법은 국내 금융기관(외국 금융기관 국내 지점 및 금융업 관련 일부 국내 비금융기관 포함)이 채권자인 경우만을 기촉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반면, 신 기촉법은 채권의 성질이 '금융채권'에 해당하면 외국 채권자 및 비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도 기촉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기촉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자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구 기촉법상 정의된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보유한 금융채권의 경우, 신 기촉법 시행 전에 발생한 금융채권(신 기촉법 시행 후 번제기를 연장한 금융채권은 제외)에는 신 기촉법이 적용되지 않고 구 기촉법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신 기촉법의 소급효를 제한하였습니다.

이러한 채권자 범위 확대에 따라 국내 기업들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채권을 보유하게 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이 금융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이에 따라 신 기촉법이 적용되는 채권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기촉법 적용대상 채무자 범위 확대

구 기촉법이 채무자 기업의 신용공여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였던 반면, 신 기촉법은 이러한 금액 기준을 폐지하여 금융채권의 채무자라면 신용공여액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기업에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 기촉법이 적용 배제 대상 채무기업으로 열거한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외국기업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이 기촉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기촉법의 적용을 받는 채무자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인사·노무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김원정 변호사(wjkim@kimchang.com)
정성욱 변호사(sungwook.jung@kimchang.com)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6년 3월 10일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 대책'의 후속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제정)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이거나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지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시에는 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2.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개정)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사업주의 동종·유사 업무 수행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근로조건, 처우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사업주가 적절한 도급대금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가이드라인 시행 취지 및 향후 전망

이번 가이드라인 제·개정은 노동개혁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강조하여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산업 현장의 자율적 실천과 상생고용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전문가 단체를 구성해 가이드라인 준수 및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근로감독 시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는 등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철저히 행정지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무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대상 법인에 대한 고시

백우현 회계사(whbaik@kimchang.com)
정병문 변호사(bmjung@kimchang.com)
서재훈 회계사(jaehun.suh@kimchang.com)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등이 개정되어 당해 과세연도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인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신설되었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통합기업보고서는 일종의 그룹 전체의 이전가격보고서에 해당하는데, 기획재정부는 2016년 4월 14일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및 제출”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기업보고서 작성대상 법인의 범위는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모든 법인임
- 통합기업보고서는 작성 대상 범위 안의 법인들이 모두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중 최상위 지배법인이 대표로 제출할 수 있음
- 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업군별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군별 통합기업보고서 작성대상 법인의 범위는 사업군내 최상위 지배법인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는 자회사별로 영위하는 사업이 다른 경우, 자회사별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성대상 법인의 범위는 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임

환경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 발족

이윤정 변호사(yjlee@kimchang.com)
이주형 변호사(joohyoung.lee@kimchang.com)

환경부는 중대 환경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환경범죄 수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2016년 2월 17일 중앙환경사범수사 전담반(“전담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담반은 법무부에서 파견한 환경전담검사를 팀장으로 하여 수사경력 5년 이상의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즉시 증거수집 및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등 검찰과 후속절차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2016년 2월 17일자 보도자료에서, 전담반이 주요 환경사범에 대한 기획수사, 관할 지검과의 협의채널 구축 등 환경사범 수사에 대한 총괄 감독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환경규제의 현장 집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는 각 유역환경청에서 담당하였기 때문에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법령 위반이나 오염행위에만 국한하여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담반의 신설로 환경부 내 첨단 수사기법이 도입되어 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관 등의 수사직무 관련 능력과 자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수사 업무 컨트롤타워가 설치됨으로써 전국 단위의 기획수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2015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실효적인 정착을 위하여 정부는 화평법 및 화관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행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에 관한 기획수사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 등의 업무 역시 전담반에서 총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로서는 기업이 운영하는 작업장과 관련된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사용 또는 기타 방법으로 취급하고 있는 업체로서는 화평법 및 화관법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 및 시행

박성엽 변호사(separk@kimchang.com)
박종국 변호사(jongguk.pak@kimcha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지난 2015년 12월 31일자로 개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개정 심사지침은 위법성의 판단기준이 되는 경쟁제한성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경쟁제한성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관해서는, 끼워팔기의 위법성을 경쟁제한성 위주로 판단하도록 수정하고, 거래상지위 판단 기준을 보완하였으며, 기술·인력의 부당 이용·채용 행위의 위법성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1.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구체화

개정 전 심사지침은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쟁제한성의 의미만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심사지침은 경쟁제한성의 의미를 “시장가격의 상승” 또는 “생산량 축소”로 규정함으로써 경쟁자 보호가 아닌 경쟁 보호가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시장력(market power)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경쟁제한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시장력을 보유했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판단하도록 구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점유율 30% 이상인 사업자는 시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20~30%는 시장집중도, 경쟁상황, 상품의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10% 이상은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이 동일한 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누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시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심사지침은 이러한 일반적인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특히 단독의 거래거절, 차별취급, 부당염매에 대하여 구체화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 끼워팔기의 위법성 판단 기준 수정

끼워팔기는 주된 상품시장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종된 상품을 끼워팔아 종된 상품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를 규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쟁법 이론이나, 개정 심사지침은 주요 국가의 법 집행 관행인 점을 반영하여 끼워팔기의 위법성 판단 기준에서 불공정한 경쟁수단인 경우를 삭제하고,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심사지침은 (1)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이 별개의 상품인지 여부, (2) 끼워팔기 하는 사업자가 주된 상품시장에서 시장력이 있는지 여부, (3)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지 여부, (4)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 (5) 끼워팔기로 인하여 종된 상품시장의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끼워팔기의 위법성을 판단하도록 요건을 수정하였습니다.

3. 거래상 지위 판단 기준 수정

개정 심사지침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서 요구되는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 전 심사지침은 거래상 지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대체 거래선 확보의 용이성’을 고려하였으나, 개정 심사지침은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2)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할 것으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심사지침은 최근 판례를 반영하여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한정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위반행위 유형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 대해서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4. 기술·인력의 부당 이용·채용 행위의 위법성 요건 완화

그 동안 일각에서는 기술·인력의 부당 이용·채용의 위법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 대신 기술이나 인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채용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해당 행위의 위법성 요건을 “현저히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서 “상당히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경쟁제한성의 판단기준이 보다 구체화되고 위법성 판단기준이 정비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집행의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법 개정에 따른 근보증 관련 조항 신설

이상환 변호사(shlee@kimchang.com)
이학진 변호사(hakjin.lee@kimchang.com)

2016년 2월 4일에 개정 민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증의 방식 및 요건 등을 규율하는 조항들이 새로 도입되어 위 시행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에 대하여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과 이에 따라 현재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증서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증의 방식 및 근보증의 채무최고액 기재에 관한 새로운 규제

개정 민법은 근보증을 포함하는 일반 보증계약의 방식과 관련하여, 보증서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여 그 보증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면서, 한편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것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래 당사자들이 보증채무의 내용을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식에 관한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민법 제428조의2).

또한, 개정 민법은 근보증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소위 포괄근보증이라 불리는 불확정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보증인이 예상하지 못한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는 결과를 방지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근보증의 유효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서면으로 채무최고액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부가하였습니다(민법 제428조의3).

2. 본 개정 관련 향후 전망

이번 민법 개정 전에도 보증인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보증인 보호법”)이 시행되어 보증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하여 왔으나 이는 개인인 보증인의 대가 없는 호의에 기한 보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었고 법인인 보증인과 관련하여서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기업의 보증(특히 해외 자회사의 현지금융에 대한 국내 모회사의 보증)에 대해서는 보증인보호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민법 개정으로 인해 일정한 회사(국내, 외국회사를 불문)가 근보증을 제공하면서 그 계약의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하는 한 보증계약 체결의 방식 및 채무최고액의 기재 등 일정한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령, 기존에 체결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근보증계약의 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 2016년 2월 4일 이후에 이를 갱신할 때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피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여부와 관계 없이 갱신된 근보증계약은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개정 민법에서 신설된 근보증 관련 조항은 통상적인 보증서에서 흔히 사용되어 온 면책조항 내지 손해담보조항의 해석 내지 효력에 대해서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보증서에 포함되는 면책조항 내지 손해담보조항은 피보증인의 주채무가 일정 사유로 무효, 취소, 면제 또는 감축될 경우에도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는 본래 피보증인의 주채무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 민법 시행과 관련하여, 주채무의 실제 발생 금액이 보증계약서 체결 시 합의한 채무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 사용되던 면책조항 내지 손해담보조항에 근거하여 그 초과금액을 보증인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바, 한편으로는 면책조항 내지 손해담보조항의 효력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도 당초에 근보증계약 체결시에 채무최고액을 보다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재

개정중재법 공포

윤병철 변호사(bcyoon@kimchang.com)
임병우 변호사(bwim@kimchang.com)
홍보람 변호사(boram.hong@kimchang.com)

지난 2016년 5월 29일 중재법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중재법은 UNCITRAL 모델중재법(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 통일적인 법률 해석 및 적용을 위하여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에서 만든 중재 모델법규)의 2006년 개정 내용에 맞추어 중재 합의의 서면 요건을 완화하고, 중재 판정부가 내릴 수 있는 임시적 처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 절차를 통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대폭 확대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중재법 개정으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플로리다주,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에 이어 2006년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수용한 19번째 나라로서 중재 제도에 친화적인 대표 국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재 합의의 서면성 완화

기존 중재법은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 편지, 전보, 팩스 또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 합의가 포함되어야만 유효한 합의로 인정하였지만, 개정중재법에서는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중재 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에도 유효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전자적 의사 표시”도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이 구두 또는 여하한 방법으로 중재 합의를 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기록(가령, 녹취 파일 또는 회의록)에 의하여 입증되는 한 유효한 중재 합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범위 확대

기존 중재법은 중재판정부가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만을 내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고, 그 집행 방법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부가 ‘현상의 유지 또는 복원’, ‘중재절차 자체에 현존하거나 급박한 위험 등의 방지 조치’, ‘진행 대상이 되는 자산의 보존’, ‘분쟁 해결에 관련성이 있는 중요 증거의 보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중재 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로써, 한국기업이 발주처와 사이에 계약 분쟁이 발생하여 발주처가 이른바 본드콜(Bond Call)을 하였을 경우 기존에는 법원에서 이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했으나, 이제는 한국 중재법에 따라 곧장 중재판정부에 임시적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3. 중재 적격, 중재 판정부의 증거 조사 권한 확대 및 중재 판정 집행 요건 완화

개정중재법에서는 기존에 사법상의 분쟁으로 한정하고 있던 중재 적격을, 재산권의 분쟁 및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비재산권의 분쟁으로 확대하여, 공법상의 분쟁도 중재 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개정중재법은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증거조사의 '협조'를 요청하면, 법원이 증인에게 중재판정부 앞에 출석하거나 필요한 문서를 제출할 것을 직접 명할 수도 있도록 하여 중재판정부의 증거조사가 실효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중재 판정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 종전에는 반드시 변론을 거치는 법원 판결을 받도록 하였던 것을 완화하여, 변론 없이 법원의 결정만으로 신속히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그 요건을 완화한 것도 주요 개정 내용 중 하나입니다.

위와 같이 이번 개정중재법은 중재의 신청, 임시 처분, 심리 진행, 집행의 모든 측면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절차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이 국제 중재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발판을 만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한국의 중재 제도를 이용하는 모든 기업들이 그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향후 해외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적으로 폭넓은 구제를 위하여 중재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분쟁에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경우 국제 중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개정안

윤병철 변호사(bcyoon@kimchang.com)
임병우 변호사(bwim@kimchang.com)
홍보람 변호사(boram.hong@kimchang.com)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 개정안이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 국제중재규칙은 국제중재의 최근 경향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중재 절차의 진행을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마련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절차를 이용하는 당사자들의 이익 보호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긴급중재인 제도의 도입입니다. 긴급중재인 제도는 일반 소송에서의 가압류, 가처분과 유사하게 중재판정부의 구성 전에도 권리 보전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중재기관이 선정하는 긴급중재인을 통해 임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2006년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AAA-ICDR)가 처음 도입한 이후, 2010년에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2012년에 국제상업회의소(ICC), 2013년에 홍콩국제중재센터(HKCIAC), 2014년에 런던중재법원(LCIA)에서 앞다투어 도입해 왔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 개정안에 의하면 긴급중재인은 선정된 날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절차일정표를 작성하고, 15일 이내에 긴급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바, 이와 같은 신속한 절차를 통해 조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해지며 국제중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그 절차가 매우 빠르고 집중적으로 진행되므로, 국제 중재 및 긴급중재인 제도에 익숙한 분쟁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준비하거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 개정안은 이외에도 중재인 선정 시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절차 및 다수 당사자의 분쟁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절차의 도입 등으로 진일보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그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그만큼 국제거래에 있어서 분쟁해결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이용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CASES 업무사례

기업일반

한국씨티은행·한국씨티그룹캐피탈,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오케이저축은행에 자산 매각

(주)한국씨티은행은 2016년 1월 21일 한국씨티그룹캐피탈(주)의 주식 100%를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주)에 160억 원에 매각하였으며, 같은 날 한국씨티그룹캐피탈(주)가 보유한 자산은 (주)오케이저축은행에 2,252억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본건 거래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주)와의 거래에서는 (주)한국씨티은행을, (주)오케이저축은행과의 거래에서는 한국씨티그룹캐피탈(주)를 대리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거래를 위한 계약서 작성을 자문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씨티그룹캐피탈(주)이 매각된 이후에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전서비스계약(Transition Services Agreement), 씨티그룹 지식재산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License Agreement) 및 과도기 지식재산 라이선스 계약(Transi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Agreement) 등의 계약들을 준비하고 체결하는 등 계약서 작성, 협상, 필요한 제반 신고·보고, 거래종결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과 면밀히 협의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본건 거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신주 발행 및 매각

국내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 하나인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신주를 발행하여 2016년 3월 23일 해당 신주(발행주식총수의 4%)를 알리바바그룹에 약 355억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상장회사의 신주 발행이라는 점을 고려한 법적 검토 및 자문이 필요하였고, 김·장 법률사무소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여 거래구조 수립, 협상 및 거래문서 작성, 거래종결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CJ대한통운, 스틱씨제이글로벌투자 파트너쉽과의 공동투자를 통한 룽칭물류 인수

2016년 1월 27일 CJ대한통운은 중국 내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스틱씨제이글로벌투자파트너쉽사모펀드투자 전문회사와 공동투자하여 미화 3억 8,700만 달러에 중국 최대 냉동물류기업인 룽칭물류의 주식 71.4%를 인수하였습니다.

본건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합작투자에 참여하는 거래를 적시에 종결하기 위한 거래구조를 수립하고, 중국계 대형 물류기업에 내재하는 중국법 상의 규제에 따른 리스크를 예상 및 평가하여 적절한 방어장치들을 거래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법률분석 및 자문이 요구되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매수인 측인 CJ대한통운을 대리하면서 중국 현지 로펌과 함께 법률실사, 관련 계약의 작성, 협상 및 체결, 중국 상무부 경영자집중신고의 Fast Track 절차에 따른 조기 승인, 거래종결업무 등의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인수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한앤컴퍼니가 투자한 에이치라인해운의 현대상선의 벌크사업부 인수

한앤컴퍼니가 투자한 에이치라인해운(주)는 2016년 3월 25일 현대상선으로부터 벌크사업부를 미화 1억 달러에 인수하였습니다.

본건에서는 포스코, 한국전력, 글로벌비스 등의 화주들과 장기용선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15척의 선박이 양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고, 위 선박들과 관련하여 선박금융계약들이 체결되어있어 매우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였으며 한정된 기간 내에 화주들 및 금융기관의 승인 및 협조를 얻는 데 실무적인 감각 또한 요구되었습니다. 본건 거래에 김·장 법률사무소는 에이치라인해운(주)를 대리하여 거래구조 수립, 법률 실사, 협상 및 거래문서 작성, 기업결합신고 및 거래종결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거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소송

대법원, 가격인상 담합 사실인정 신중해야

대법원은 최근, 라면제조·판매업체들이 라면 가격인상 등을 합의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9조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자 측의 진술을 유력한 증거로 삼아 1차 가격인상에 관한 합의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해당 진술이 진술자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전문(傳聞)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가격인상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거나 선두업체가 먼저 인상하면 다른 경쟁사업자들이 이를 추종하기로 하였다는 정도로서 구체성과 정확성이 낮다고 보아, 합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2차 가격인상 이후와 관련하여서도 선두업체인 원고 회사가 타 업체들과 가격 인상일자나 인상내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은 있으나, 다음의 점들에 비추어 보면 가격인상 담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국내 라면시장에서 선두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면 경쟁사업자들이 이를 따라 가격을 인상하는 오랜 관행이 있었던 점
- 선두업체의 라면 가격은 정부로부터 사실상 통제를 받는데, 경쟁사업자들로서는 선두업체가 정부와 협의한 가격수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고 선두업체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에 합의에 기한 결과로 보기 어려운 점
- 라면제품의 품목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각 품목별로 가격을 정하거나 추종하는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개별 상품의 가격인상폭이 다양하게 나타나 ‘외형상 일치’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한 점
- 라면업체들이 가격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유통망에 대해 각종 지원을 하는 등 합의가 있었다면 나타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등

대법원은 신빙성이 부족한 자진신고 회사 임직원들의 진술이나, 가격정보 교환 사실만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고, 외형의 일치, 정보교환의 경위 기타 여러 정황에 기초하여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합의의 존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다 엄격한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치밀한 사실관계 확인과 분석을 통하여 가격인상 담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여러 사정들을 구체적인 반박증거를 제시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주장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의 신의칙 항변 적용 사례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통상임금청구 사건에서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회사의 신의칙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특히 회사가 주장한 신의칙 항변에 대하여 (1) 추가 지출액이 총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점, (2) 회사의 사업규모와 수익률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에 지급 여력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3)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격려금이나 성과금을 지급해 온 점, (4) 회사가 2012년까지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뒀으므로 2014년의 적자에도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회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미지급분을 추가 지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피고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노사합의로 정한 통상임금의 액수보다 약 60% 정도 증가하고 (2)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할 경우 노사가 기존에 합의한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1) 2014년 이

후 회사의 영업손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2) 각 연도별 추가부담액이 회사의 각 연도별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며, (3) 최근의 조선업의 극심한 불황으로 인해 회사의 순차입금비율 및 부채비율 등이 악화되고 있으며, (4) 회사의 신용등급이 최근 들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피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예상 외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원고들의 청구 인용 시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피고인 회사 측을 대리하여 회사의 경영상태를 산업환경적 측면, 회사의 수익구조적 측면, 회사의 재무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의 실질임금상승, 부채비율 증가, 사업투자 기회 상실, 고용증가 기회 상실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과를 강조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중요한 사례로 판단될 수 있으며, 향후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거래

공정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서비스에 업그레이드 권한을 포함하여 판매한 행위 등에 대해 무혐의 종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6년 4월 12일 김·장 법률사무소가 오라클 사를 대리한 사건에서 전부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오라클 사의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고객이 DBM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서비스를 받음에 있어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해 향후 출시되는 업그레이드를 받지 않을 권한을 허용하지 않은 것과 고객이 보유한 DBMS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중 일부에 대하여만 유지보수서비스를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유지보수서비스를 받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오라클 사의 정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 전원회의는 2차례의 심의를 거쳐 이상의 어느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DBM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서비스에 업그레이드가 포함된 것에 대해 당초 유지보수서비스와 소위 ‘메이저 업그레이드’가 별개의 시장(상품)이라고 보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회의는 DBMS 시장은 DBMS 소프트웨어와 유지보수서비스, 그리고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포함하는 ‘시스템시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지보수서비스와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별개의 독립된 상품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정책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나 경쟁사업자 감소 등 경쟁제한 효과가 발견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오라클 사가 고객이 보유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중 동일한 라이선스 세트에 속하는 모든 라이선스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유지보수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서 사업활동 방해행위(불이익 강제) 및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구입강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러한 오라클 사의 정책은 지식재산권의 침해 및 무단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고객들이 오라클 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위 정책이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을 고객이 알 수 있고, 고객이 위 정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다른 경쟁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경쟁제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위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법적, 경제적, 기술적 쟁점에 관해 방어논리를 제시하여 전부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세무

실질적 관리장소의 정의 및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

법인세법 제1조는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합니다.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므로 내국법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싱가포르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사건에서, 최근 대법원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싱가포르에서 국내로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법인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한 정의와 판단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고,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란 법인의 장기적인 경영전략, 기본 정책, 기업재무와 투자, 주요 재산의 관리·처분, 핵심적인 소득창출 활동 등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 관리장소의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아래 기준을 제시하면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이사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의사결정기관의 회의가 통상 개최되는 장소
- 최고경영자 및 다른 중요 임원들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 고위 관리자의 일상적 관리가 수행되는 장소
- 회계서류가 일상적으로 기록·보관되는 장소 등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국외에서 전체적인 사업활동의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결정하였고, 국내에서는 단기간 그 사업활동의 세부적인 집행 행위만을 수행하였으므로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로 이전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증권

롯데쇼핑의 미화 1억 달러 규모 해외 사모사채 발행

2016년 1월 29일 롯데쇼핑은 미화 1억 달러 규모의 3년 만기 해외사모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2014년, 2015년에 이어 본건 해외사모사채 발행 프로젝트에서 인수인인 미츠비시도쿄UFJ은행(BTMU)의 법률 자문사로 선임되었으며, 국내기업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해외사모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법상 문제와 발행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등 성공적인 거래종결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보험

퍼시픽 라이프 한국 지점 설립 본허가

퍼시픽 라이프 리 리미티드 한국 지점(Pacific Life Re Limited, Korea Branch)은 지난 2016년 3월 3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한국에서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는 본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퍼시픽 라이프 리 리미티드는 영국, 아일랜드, 아시아 및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주로 생명보험 위험 분야에 대한 재보험을 제공하는 영국 재보험사입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퍼시픽 라이프 리 리미티드 한국 지점 설립과 관련하여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지점 설립을 위한 예비허가 및 본허가 취득을 위한 제반 법률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국제중재·소송

해외 선박부품공급계약 상 부품하자 관련 분쟁을 다룬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승소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소송 전문그룹은 해외 선박부품공급기업을 대리하여, 공급부품의 하자에 대한 손해 관련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미국 국적의 중재인 1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준거법은 한국법, 중재지는 서울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해외 업체는 고객이 지정한 사양에 따라 부품을 디자인, 제작, 공급하였으나, 해당 부품이 선박에 장착된 뒤 시행된 선박의 성능 시험 과정에서 해당 부품은 전혀 다른 사양에 따라 제작이 되었어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고객은 부품 제작 공급 계약상의 일반적인 제품의 품질 보증 조항을 근거로 하여 해외 업체가 부품을 디자인, 제작할 때에 고객이 지정한 사양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부적합할 경우 적절히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최소한 사양의 오차를 염두에 두고 부품을 디자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소송 전문그룹은 해외 업체와 해당 분야의 해외 전문가들과의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당 부품과 관련된 기술적 특징과 선박 건조 업계의 실무 관행을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국제중재센터에서 열린 4일간의 심리에 참석하여 증인 신문 및 변론을 하였습니다.

중재인은 고객의 모든 청구를 배척하고, 오히려 해외 업체의 반대신청 중 계약 해지 및미지급 부품 대금의 지급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고객으로 하여금 해외업체의 중재비용 및 변호사 비용 대부분도 상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기술적인 쟁점이 포함된 제작물 공급 계약 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전형적인 분쟁으로, 변호사에게는 생소한 선박 부품 관련 기술사항 및 그에 대한 실무 관행을 해외에 있는 클라이언트와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정확히 이해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중재인에게 전달한 결과 승소판정을 이끌어낸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ICC 국제긴급중재절차에서 제기된 한국기업에 대한 기술사용금지 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소송 전문그룹은 국내 업체를 대리하여 국제상업회의소 (“ICC”) 국제중재규칙에 따른 긴급중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긴급중재인은 프랑스 국적이었으며, 준거법은 스위스법, 중재지는 스위스 제노바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국내 업체는 고도정밀기술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 업체로부터 기술사용을 즉시 금지하게 해달라는 전격적인 긴급중재신청을 당하여, 긴급처분이 내려질 경우 당해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외국 업체는 한국업체의 방어를 어렵게 하고자 전략적으로 공휴일에 증거를 포함하여 약 1,000여페이지에 가까운 방대한 양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소송 전문그룹은 즉시 전담팀을 구성하여 국내 업체와 수일간의 연속 회의 및 자료 검토를 진행하고 ICC 중재규칙에 따라 1주일 만에 신청서와 유사한 양의 방대한 영문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4일 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심리에 참석하여 증인 신문 및 변론을 하였습니다. 긴급 중재인은 심리 후 2일 만에 위 외국업체의 기술사용금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 업체는 기술자료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업 좌초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 업체와의 기술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긴급중재 유형으로, 긴급중재인 제도를 포함한 국제중재제도에 대한 풍부한 경험 및 깊은 이해도와, 국내 업체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여 외국 긴급중재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한국어 및 외국어 능력이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로서 국제 로펌들의 경험도 제한적인 긴급중재절차를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소송 전문그룹이 주도적으로 처리하여 승소 판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부동산

폰테가데아(Pontegadea) 그룹, 명동 엠플라자 취득

폰테가데아(Pontegadea) 그룹은 그룹 내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패션업 브랜드인 자라(Zara)의 국내 최초 입점 건물인 서울 중구 명동2가 소재 엠플라자 건물 및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어반라운지엠 주식회사(현 폰테가데아코리아 주식회사, “인수대상회사”)의 발행주식 504,644주(지분율 100%)를 2,067억 원에 매수하는 거래를 2016년 2월 1일 완료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법률실사, 주식매매계약의 협상 및 체결, 주식매수대금 및 주식매수거래 종결일과 같은 날 상환이 이루어진 인수대상회사의 프로젝트금융 대출금채무 (1,900억 원 상당) 상환재원의 조달 및 지급을 위한 외국 인투자구조 설계 등 일련의 거래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특히 대규모점포 및 관광숙박시설 임대업 영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고려하여 주식양수도 거래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등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거래 완수에 기여하였습니다.

NEWS 새소식

수상소식

아시아·태평양 지역 혁신 로펌 선정 - FT Asia-Pacific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6

글로벌 경제 전문지 Financial Times(FT)가 발행한 'FT Asia-Pacific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6'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혁신 로펌(FT Law 25 - Asia-Pacific headquartered firms) 5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자문한 '인터넷 전문은행 법인 설립'과 '국민은행 커버드본드 발행'건이 "Finance" 부문 Standout (최상위 등급)에 선정되고, '대한민국 정부의 중국 현지 위안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관련 주관사 자문' 건이 Commended (3순위 등급)에 선정되어, 이 부문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Corporate & Commercial" 부문에서 'Carlyle의 SBI Mortgage 인수'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건이 각각 Commended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FT는 로펌 및 in-house counsel의 nomination 자료와 고객·전문가 인터뷰 등 일련의 리서치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분야별 우수 로펌 및 변호사, 사내 변호사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리서치 결과를 리포트로 발행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선정된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FT Law 25 – Asia-Pacific Headquartered Firms : 5위

Corporate & Commercial – Asia-Pacific Headquartered Firms

- Carlyle의 SBI Mortgage 인수: Commended (3순위 등급)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Commended (3순위 등급)

Finance – Asia-Pacific Headquartered Firms

- KT등 인터넷 전문은행 법인 설립: Standout (최상위 등급)
- 국민은행 커버드본드 발행: Standout (최상위 등급)
- 대한민국 정부의 중국 현지 위안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관련 주관사 자문: Commended (3순위 등급)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 - Who's Who Legal Awards 2016

김·장 법률사무소가 '2016 Who's Who Legal Awards'에서 올해의 한국 로펌(Korea Law Firm of the Year)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2006년 이후 11년 연속 Korea Law Firm of the Year로 선정되어 왔습니다.

영국계 법률미디어 Law Business Research의 브랜드 Who's Who Legal이 주최하는 Who's Who Legal Awards는 60개 국가·주(州)의 주요 로펌 및 변호사에 대한 기업 고객들의 설문을 토대로, 올해의 로펌을 비롯한 국가별·업무분야별 로펌 및 전문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4월 11일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6

김·장 법률사무소가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6'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의 한국 로펌(South Korea National Law Firm of the Year)상을 수상하였습니다.

Chambers Asia-Pacific Awards는 Chambers and Partners guide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리서치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업무실적 및 성장세, 고객 서비스 우수성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낸 아시아-태평양 지역별 최고의 로펌을 선정하였습니다.

Chambers and Partners는 세계적인 권위의 법률 미디어로서 세계 각국의 로펌 순위 가이드 북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는 'Chambers Global 2016' 및 'Chambers Asia-Pacific 2016'에서도 주요 업무분야의 국내 선두로펌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4월 8일 싱가포르 Fullerton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 - IFLR Asia Awards 2016

김·장 법률사무소가 'IFLR Asia Awards 2016'에서, 14년 연속으로 올해의 한국 로펌(Korea Law Firm of the Year)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소가 자문한 PT Berlian Laju Tanker 건이 기업구조조정 (Restructuring) 분야 올해의 딜로 선정되었고, 저희 사무소 이수경 변호사가 기업인수·합병 (M&A) 분야의 Rising Star로 선정되었습니다.

IFLR Asia Awards는 세계적인 금융·법률 미디어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가 매년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각 로펌의 제출 자료 및 변호사들이 인터뷰 등 독자적인 리서치를 통해 아시아 지역 우수 로펌과 딜, 변호사를 선정합니다. 올해 시상식은 3월 3일 홍콩의 Island Shangri-La 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7개 전 분야 선두 로펌 선정, 28명의 변호사 및 전문가 Leading individual 선정 - Chambers Global 2016

세계적인 법률 미디어 Chambers & Partners에서 발행하는 세계 각국 로펌 순위 가이드 북 'Chambers Global' 2016년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7개의 한국 리서치 전 분야에서 1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Asia-Pacific지역 리서치 'International Arbitration'분야에서 4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28명의 변호사 및 전문가들이 각 분야의 Leading Individual로 선정되었으며, 4명의 변호사 및 전문가들이 Other Noted Practitioner로 소개되었습니다. 선정된 분야 및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LEADING FIRM



LEADING INDIVIDUAL

Practice Area

South Korea

- Banking & Finance: Band 1
- Capital Markets: Band 1
- Corporate/M&A: Band 1
- Dispute Resolution: Arbitration: Band 1
-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Band 1
- Intellectual Property: Band 1
- International Trade: Band 1

Asia Pacific

- Arbitration (International): Band 4

Leading Individuals

South Korea

- Banking & Finance: 박수만, 허익렬, 조영균, 윤희선, 김영민, 명진아
- Capital Markets: 고창현, 허영만, 정명재
- Corporate/M&A: 정경택, 노영재, 박종구, 허영만, 변영훈 (Expertise Based Abroad –Japan), 박종현**, 이순열**
- Dispute Resolution - Arbitration: 윤병철*, 박은영, 정교화, Kay-Jannes Wegner, Richard Menard, Joel E. Richardson**
- Dispute Resolution - Litigation: 정진영, 서정걸
- Intellectual Property: 양영준, 장덕순, 양준영, 김영, 한상욱, Martin KAGERBAUER (Expertise Based Abroad – Germany)
- International Trade: 안완기, 김주홍**

* Star Individual: A lawyer with exceptional recommendations in his field.

** Other Noted Practitioner: An individual who handles notable matters and / or has received some recommendation during the course of our research. However, he has not received a sufficiently high level of sustained recommendation to be included in the printed version of the Chambers guide. Instead, the 'Other Noted Practitioner' category shows that the individual is on Chambers' research radar.

사무소 동정

2016 춘계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전략 세미나 발표

김·장 법률사무소의 임치용 변호사, 이종광 회계사가 2016 춘계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전략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주최로 4월 14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임 변호사와 이 회계사는 각각 '선제적 구조조정의 전망'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권 승계'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관련 법·정책 세미나 참여

김·장 법률사무소의 윤인성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관련 법·정책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4월 11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서울대경쟁법센터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의 개선 방안과 정보교환 공동행위에 관한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본 세미나에서, 윤 변호사는 '피조사기업의 절차적 권리 보장에 관한 주요 쟁점'을 다룬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국내 제약업계의 CP(Compliance Program)운영 확산을 위한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 발표

김·장 법률사무소의 조하윤, 강한철 변호사가 CP(Compliance Program)운영 확산을 위한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 발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한국제약협회의 주최로 열린 본 워크숍은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되었으며, 제약사의 윤리경영 자율준수 관리자를 대상으로 자문회의, 학술 좌담회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내부 CP운영 실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번 워크숍에서 '강연 및 자문의 적법성 인정요건'을 주제로 강연하였으며, 강 변호사는 'CP등급 평가제도 도입 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사회 공헌

'동화책 읽어주는 남자'로 변신한 전 헌법재판관·고검장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목소리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진행된 다문화가족 법률아카데미를 수강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말이 서툴러 아이들에게 동화를 제대로 읽어줄 수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 계기가 되어,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의 위원들이 동참하여 동화를 낭독하고 녹음하였습니다. 녹음된 음원 및 동화책들은 다문화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다문화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가 서울 종로구와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이번 협약을 통하여, 김·장 법률사무소 내 봉사활동 동호회인 'K&C Friends'와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영어공부방 운영, 예비법조인 법률교육, 공동사회봉사를 지원하는 등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Newszine

KIM & CHANG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39 (우) 03170

전화: 02-3703-1114 팩스: 02) 737-9091/9092 E-mail: lawkim@kimchang.com www.kimchang.com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저희 사무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치나 행위에 앞서서는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은 출처와 저자(KIM & CHANG)를 밝히고 내용을 임의 편집하지 않는 경우, 개인적인 용도에 한하여 전재하거나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정보 전달 서비스의 수신인을 추가하고자 하시면 newsletter@kimchang.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